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수 의 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6546호, 2019. 8. 27. 공포, 2021.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를 허용하며,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위탁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명시(안 제11조의2)

- 관계 전문기관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위탁 시 위탁기관을 고시

나. 동물보건 전공 학생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 허용(안 제12조)

-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지도교수가 동물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 허용

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명시

라.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별표 2)

-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을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특기할 사항 없음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동물 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자를 포함한다)에게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 교육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제21조의2 본문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로 하고,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목 중 “1년간”은 “3년간”으로 하고, “가목에 따른”을 “가중처분 적용”으로 하며, 나목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의2호, 제21조의2제1의2호의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 <u>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동물 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u> <u>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u> <u>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u>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u>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자를 포함한다)에게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교육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u>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u>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 ----- ----- <u>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u>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u> 2. ~ 5. (현행과 같음)
---	--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다·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522